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김 병 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63
II. 향후 은행관련 금융규제 및 감독 변화 전망	64
1. 자본의 질(quality) 제고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	
2.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의 완화	
3.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	
4.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관련 규제 강화	
III. 향후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81
1. 국제적 감독규제의 강화방안의 이행 계획	
2. 감독 규제 강화에 따른 향후 은행산업의 발전 전망	
가.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안정적 성장모델로의 회귀	
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역적 다각화와 업무 겸업화	
다. 대형화 및 M&A를 통한 시장 재편의 가속화	
IV. 맺음말	87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bdkim@kif.re.kr

I. 문제의 제기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감독 및 규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기이후의 금융산업은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번 금융위기의 여파가 진원지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대응이 불가피해지면서 금융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
 -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금융관련 각종 국제적 규범제정기구¹⁾의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각국의 규제감독 당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국가간 규제개혁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
- 현재 논의 중인 국제적 금융 규제개혁의 방향은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들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
 - 논의 중인 국제적 규제 개혁 방안의 국내 영향분석(Quantitative Impact Study)을 사전적으로 실시하여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아국 금융산업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국제적 조율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
 - 각국 별로 자국의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 본 자료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은행산업에의 영향 및 발전방향을 전망해보도록 함.
 - 은행산업과 관련된 규제개혁 방안으로서 은행의 자본의 질 제고,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의 적립,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 강화 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등을 살펴봄.
 - 또한 규제 강화방안의 구현 계획의 타당성 및 아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향후 은행산업이 변화된 규제환경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것인지를 전

1) 금융위기 관련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국제적 규범제정기구로서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을 들 수 있음.

망해봄.

II. 향후 은행관련 금융규제 및 감독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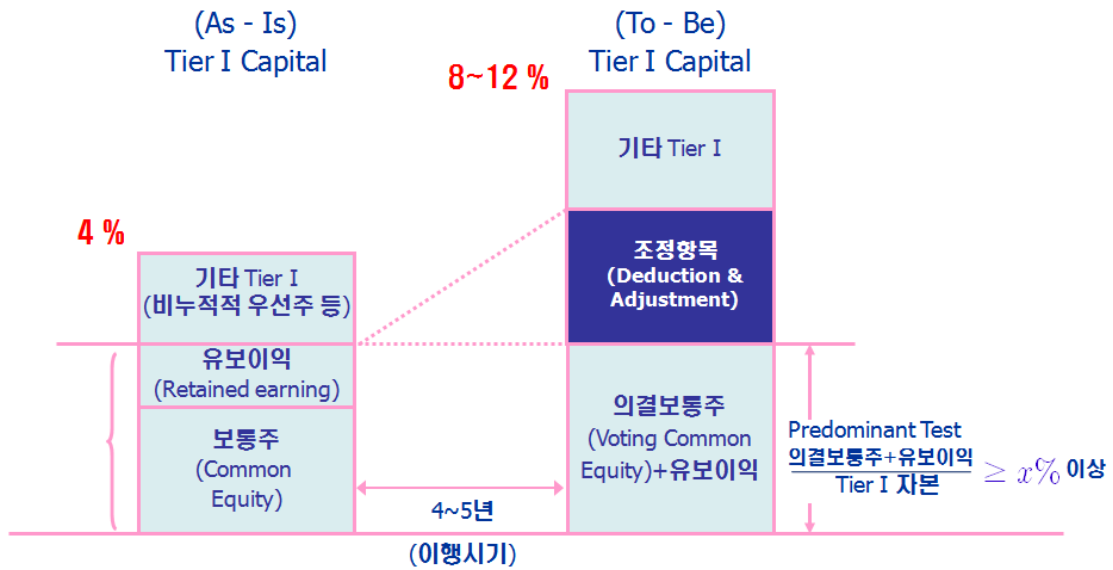
1. 자본의 질(quality) 제고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배우게 된 가장 큰 교훈 중의 하나는 위기가 발발하면 결국 상업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척추 역할을 하면서 금융안정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임.
- 따라서 타 업권에 비해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 강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은행의 건전성 규제 중에서도 자본금 규제의 대폭적 강화가 가장 큰 특징임.
- 국제적으로 은행권의 감독 규범제정기구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임.
 - 동 기구를 통하여 세부적인 감독기준이 제시되면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조율을 거쳐서 최종 실행 방안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우선 BCBS는 각국별로 약간의 상이한 측면이 있는 은행 자본 정의의 일관성 및 질(quality)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영국의 노던 록(Northern Rock)은행의 경우와 같이 비록 총 BIS 자기자본비율은 높지만 고질의 자본은 부족한 경우 결국 손실흡수 능력이 저하되어 파산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임.
 - 결국 위기시에서는 하이브리드 채권 등을 포함한 Tier II 자본의 손실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간과했다는 자성에 기인함.
 - 또한 각국별로 회계,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해 은행 자본금 정의에 상이한 측면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으로 현행 4% 내외의 Tier I 자본 수준을 8% 이상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되 Tier I 자본의 일정부분 이상을 의결보통주 및 유보이익으로 보유토록 하는 소위 주요항목 테스트(predominant form test)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

음.

- Tier I 자본의 주요 항목 테스트는 보통주자본에서 조정항목(deduction and adjustment)을 차감한 후 Tier I 의 일정 % 이상을 보통주와 유보이익으로 보유토록 하게 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²⁾
- 주요항목 테스트의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합의된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방법 이외에도 주요항목 테스트를 좀 더 유연하게 정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각국별로 회계 및 법률적 차이로 인해 보통주의 개념에 약간씩 상이한데 이를 조정항목의 적용을 통하여 경제적 실질성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그림 1> 자본의 질(quality) 제고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 이와 같은 자본금 수준의 상향조정은 향후 4~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위기이후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새로운 규제조치가 실물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임.

- 또한 위기로 인해 자본력이 약화된 각국의 은행들에게 자본금 규제 강화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도 있음.

2) 즉, 의결보통주(voting common equity) + 유보이익(retained earning) - 조정항목(deduction and adjustment) ≥ x% 형태임.

- 한편 새로운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기의 극복 단계에서 은행에 투입된 정부 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Tier I 자본을 보통주 중심의 양질자본으로 구성토록 규제하려는 이유는 의결 보통주(voting common equity)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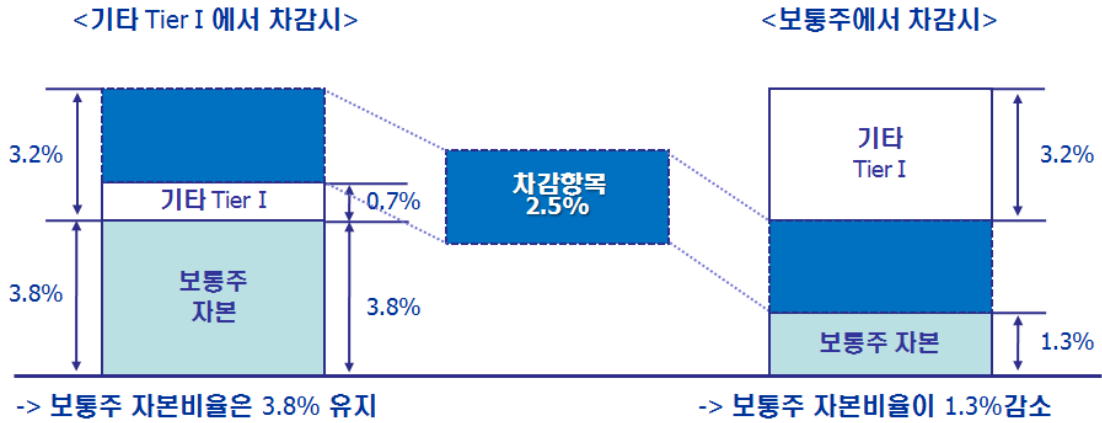
- 첫째, 보통주는 해당은행에 위기 발생 시 손실을 실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 둘째, 은행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 자원의 절약 및 적절한 배분이 필요해지는데 보통주는 이 상황에서 자원배분과 관련된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셋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되는가 여부가 시장 평판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위기 이후에는 보통주가 가장 시장참가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자본 적정성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음.
- 넷째, 보통주의 의결권이 중요한 요소로서 의결권을 통해서 은행의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 조항목의 적용을 보통주에 대해서 실시할지, 기타 Tier I 자본에 대해서 실시하지 여부에 따라서 보통주 자본의 비율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주에서 직접 조항목을 차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만약 조항목을 보통주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타 Tier I 자본에 대해서 차감할 경우 “실질 보통주(tangible common equity)”가 낮은 금융회사도 주요항목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 보통주가 거의 없는 금융기관은 손실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들에게는 영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인식도 단순히 무형자산만을 제외하는 것 이상으로 자본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항목의 차감은 보통주를 대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차감 및 조정 효과 비교



- 물론 이상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 논리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조정항목 대상인 무형자산만을 보통주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조정항목은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항목 테스트(Predominance test)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는 무형자산만을 조정한 보통주 개념으로도 회사의 지배구조상의 인센티브를 조절할 수 있으며 모든 조정항목을 보통주에서 차감하는 것이 지배구조 이슈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는 것임.
 - 또한 일부 조정항목은 보통주가 아닌 Tier I 자본에서 조정되는 것이 회계적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음.

- 각국별로 다양한 잠재적 조정항목 대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정항목을 설정하는 일관된 원칙 또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조정항목의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정항목을 설정하는 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Pilar I 규제에서 반영된 위험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도록 하여 기존의 자본금 규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은행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금유입이 발생치 않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자본에서 차감토록 조정항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의 회계기준과 상충이 발생할 경우 회계기준 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도록 회계평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질적 경제 변동성을 반영치 않는 일시적 변동성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도록 규제 자본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래의 법률적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성에 우선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회사 및 국가간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서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은 원칙을 배경으로 하여 보통주에서 차감하는 조정항목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추가적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한 상태임.

□ 조정항목의 대표적인 예로서 영업권(goodwill) 등의 무형자산(intangibles)이 논의되고 있음.

- 영업권은 M&A 시에 피인수회사를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할 경우 인수회사의 장부에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와 같은 무형자산은 해당은행이 위기상황에 있을 경우 손실흡수 능력이 거의 없음.
- 또한 자생적으로 성장한(organic growth) 은행에 비해 M&A를 통해 성장한 은행을 상대적으로 자본금 측면에서 우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일조하고 있음.
- 한편 영업권이 회계장부에서 감자(write down)되면서 관련된 이연세금 부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동 이연세금 부채(deferred tax liability) 금액을 차감한 순계방식의 무형자산 금액만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무형자산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거래가 활발하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이외에도 조정항목의 잠재적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자기주식(treasury stock)
- 이연 세금자산(deferred tax assets)
- 결합대상 이외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지분
- 내부계산법 사용시 예상손실 대비 충당금 미달액

- 결제지연 거래
 -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헷지 용도로 사용한 파생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
 - 해당은행의 신용위험의 변화로 인한 부채의 공정가격 변화에 따른 이익 및 손실
- 이상의 조정항목 중에서도 내부계산법 사용시 예상손실 대비 충당금 미달액을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안은 현행 충당금제도를 한 층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됨.
- 현행 바젤II 규정상 내부등급법상의 예상손실액 대비 충당금 미달액은 Tier I 자본과 Tier II 자본에서 각각 50% 차감하고 있음.
 - 한편 만약 대손 충당금 미달액을 자본에서 조정항목으로 차감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과잉분(surplus)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보통주 중심으로 은행의 자본의 질과 일관성을 제고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 회계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다양한 미결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로 다양한 종류의 보통주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현금흐름도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어 Class A, Class B 등의 보통주처럼 의결권과 배당권 등이 차별화되어 있는 다양한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 보통주에 포함하는 기준을 의결권에 의거할 것인지, 현금흐름에 의거할 것인지, 또는 제 3의 결정원칙을 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부 국가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닌(non joint stock company) 금융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비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농협, 수협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는 상호회사,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회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보통주 상응부문(equivalent)을 정의하는 원칙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주요항목 테스트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토록 규제를 가할 것인가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테스트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 및 배당과 관련된 규제를 부과하여 자본을 보존토록(capital conservation) 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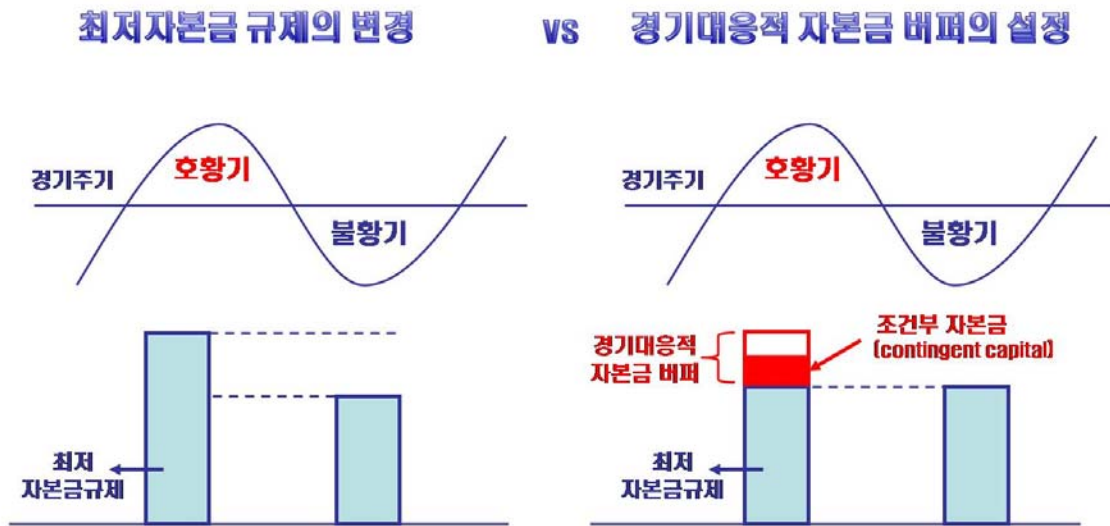
2.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의 완화

-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음.
 - 호황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산의 건전성이 양호해지면서 자산의 증가율이 더욱 상승하는 반면, 불황기 또는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자산을 경쟁적으로 매각하는 디레버리징이 벌어지는 악순환(vicious cycle)에 직면할 수 있음.
- 은행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 완화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음.
 - 은행 자체의 지불능력(Bank Solvency)을 제고시킴.
 - 은행 산업의 지불능력(Banking Sector Solvency)을 제고시킴.
 - 신용창출(Credit availability)을 제고시킴.
- 은행의 자본금 규제 측면에서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호황기에는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금을 더 적립하도록 하고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적립한 자본금을 소진할 수 있도록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1안)최저 자본금 규제수준을 호황기/불황기에 따라 변동하는 방법과 (2안) 최저 자본금 규제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경기 대응적 자본금 버퍼를 쌓도록 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후자를 선호되는 상태임
 - (1안)에서와 같이 최저 자본금 규제수준이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 시장 참가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2안)이 선호되고 있음.
 - 예를 들어 (1안)처럼 최저 자본금 규제수준이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호황기의 높은 자본금 규제 수준이 새로운 규제수준으로 인식되어 불황기에

도 동 수준의 높은 자본금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렇게 되면 불황기에는 기존에 비축된 자본금을 소진하면서 자산의 급격한 축소를 가급적 방지하려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그림 3>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의 설정



- (2안)의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고정목표제(Fixed Target)와 변동목표제(Time Varying Target)가 있을 수 있음.
- 고정목표제와 변동목표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도 도입 초기에서는 고정목표제로부터 출발하여 제도가 안정되면 좀 더 정교한 변동목표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음.
 - 고정목표제는 제도가 단순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유도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변동목표제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서 정교한 제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변동목표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매크로 변수에 연동하는 방법과 해당은행의 변수에 연동하게 설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 매크로 변수의 예는 credit spread의 중장기 평균치와의 차이, GDP 성장률 대비 추가성장률 등을 들 수 있음.
 - 은행 변수의 예로는 여신증가율의 중장기 평균치와의 차이, 포트폴리오의 도

산확률의 변동 등 다양한 신용공여지표 및 이익지표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변동목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기순환 주기를 적시에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각국별로 경기지표는 다양한 선행/후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기지표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경기지표 설정하고 버퍼 목표치 차별화할 경우 국제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은행들은 규제가 낮은 곳으로 영업을 확장시키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추구할 유인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호황기에 버퍼 목표수준 미달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고 불경기에는 버퍼 소진토록 하는 자본보호(capital conservation)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즉 이익의 일정부분을 버퍼 적립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익의 일정률(fixed percentage)을 버퍼 적립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과 이익에 비례하여 적립하는 방안(sliding scale) 등이 가능함.

-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대 기관에는 강화된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의 목표치 적용하게 하고 또한 모든 은행에 대해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를 가급적 Tier 1 이상의 고질의 자본금으로 적립케 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Tier I 자본의 일부 또는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의 일부분을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³⁾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조건부 자본은 평상시에는 부채이나 불황기에 일정요건(trigger) 충족 시 보통 주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조건부자본의 대표적 예로서는 역전환 사채(reverse convertible debenture), 규제용 복합증권(regulatory hybrid security) 등을 들 수 있음.
 - 역전환사채는 해당은행의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채권이 주

3) 조건부자본의 형태 및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은행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김병덕, 2009)를 참조할 것.

- 식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규제용 복합증권은 해당은행의 주가하락 등과 같은 해당은행과 관련된 발동요건(firm specific trigger)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발동요건(regulatory trigger)이 동시에 만족되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조건부 자본금은 이론적으로는 유익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도입하는데는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동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론적으로는 은행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자본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자본확충 수단중의 하나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건부 자본의 주식으로의 전환 발동 요건과 관련되어 주식시장과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문제 발생의 우려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감독목적에 부응하면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는 조건부 자본을 디자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조건부자본의 도입 문제에 관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됨.
- 조건부 자본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 영국 등은 자본시장이 방대하여 채권 발행시 시장소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는 가급적 금융시장을 통해서 금융위기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음.
 - 반면 이들 국가에 비해 자본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 발행시 시장소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조건부자본을 강제화할 경우 은행이 높은 발행 비용을 지불해야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조건부자본의 도입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만약 도입이 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대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자본금(capital surcharge)을 적립하는데 한하여 허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영업이 활발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대기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동 기관에 대해서만 조건부자본을

허용할 경우 조건부 자본의 발행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한편 2009년 7월 BCBS는 거래계정(trading book), 재증권화, ABCP conduit에 대한 유동성공급(liquidity line) 처리 등에 적용되는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요건을 발표함.
 - 거래계정에 대해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때 현행 기준인 VaR에 추가적으로 Stressed VaR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함.
 - Stressed VaR는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중대한 손실발생이 포함된 관측기간(1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해 산출한 VaR 값임.
 - 이와 같은 거래계정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로 인해 주요 다국적 은행의 거래계정에 필요자본 규모는 2010년 말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 현행 바젤II 최저 자본금 규제상의 경기순응성을 촉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함수 입력치를 순화(Dampening the inputs)하는 방법으로는 부도율 산정 시 PIT(Point-in-Time) 대신 TTC(Through-the-Cycle)를 이용하면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부도율 산정시 PIT 방식은 바로 전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반면 TTC 방식은 경기사이클 전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도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경기중립적인 부도율을 측정할 수 있음.

- 한편 현행 충당금 적립제도를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 현행 충당금제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저적립률 기준은 여신 건전성 단계에 따라 감독당국이 정한 일정 적립률 이상을 적립하는 방안으로 현행 국내은행이 충당금을 적립하는 기준임.
 - 발생손실기준(Incurred loss model)은 은행의 여신 중 실제로 부실이 발생한 부분(발생하였으나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 포함)만을 적립하는 것으로 국제회계의 기준이 되고 있음.
 - 예상손실기준(Expected loss model)은 은행이 자체손실률을 추정하여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적립하는 방안으로 바젤II BIS비율의 내부등급법 산출 기준

이 이에 해당함.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및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는 대손충당금 결정시 재량적 판단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임.
 - 즉, 발생 손실 기준 이외에 예상손실/ 기대현금흐름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의 도입을 검토 중임.
 - 또한 현행 IAS39(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기준)는 손실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금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정가격(fair value)측정과 관련된 IAS39의 개정을 검토 중임.

- BCBS(Basel Committee for Banking Supervision)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는 충당금 적립액이 예상손실(expected loss)에 미달하는 부분을 Tier I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안과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과 관련된 반대유인(Disincentive)을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현행 Basel II는 충당금 중 Tier II 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위험가중자산의 1.25%로 제한하고 있어서 충당금 적립의 반대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제의 개선이 필요함.

3.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

- 금번의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회사의 유동성위험 및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확충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동성위험 및 레버리지 규제도 국제적으로 공조화되면서 강화될 전망이다.
 - 기존의 바젤 II 규제는 자본의 건전성 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는 각국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감독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위기의 전이 과정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현행 바젤II는 유동화 자산 등 리스크가 작게 인식되는 위험자산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레버리지의 규제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명시적으로 없지만 단순 레버리지 비율을 은행 경영평

가시에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표 1> 금융기관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요약

원화 유동성비율	금융기관	자산·부채 잔존만기	보고주기	표준비율
유동성 자산 유동성 부채	은행	1개월이내	매월	100%이상
	금융지주사, 중금사, 부동산신탁회사, 여전사	3개월이내	매분기	100%이상
	증권금융회사			70%이상
	신협, 저축은행	원화유동성 비율규제는 따로 두지 않고 경영 실태평가에만 반영		

- 2009년 9월 BCBS 총회는 향후 유동성 조달에 관한 글로벌 최저기준(minimum global standard)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국제적 유동성 리스크 감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단기 지표로서 위기 하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stressed liquidity coverage ratio)을 도입하여 위기 상황 하에서 은행이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도록 함.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 유동자산 / 위기상황시 30일간의 순현금 유출(현금 유출 - 현금유입)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100%이상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함.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위기상황의 판별기준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 문제와 각국별로 상이한 금융시장 상황에서 유동자산의 분류 문제가 등이 추가 연구 대상임.
 -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위기상황 및 유동자산의 분류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장기지표로서는 핵심조달 비율(core funding ratio)과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등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 핵심조달 비율은 영국의 터너보고서에서 주장된 개념으로서 안정적인 자금조달 원인 핵심조달액이 총 수신금액의 일정수준을 상회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기간별로 차별화하여 규제할 수 있음.
 - 핵심조달비율(1개월)=(잔여만기 1개월이상 도매자금조달 + 소매예금)/(총수신

- + 약정액(commitment)의 50%) > 60%
 - 핵심조달비율(2개월)=(잔여만기 2개월이상 도매자금조달 + 소매예금)/(총수신 + 약정액(commitment)의 50%) > 55%
 - 핵심조달비율(3개월)=(잔여만기 3개월이상 도매자금조달 + 소매예금)/(총수신 + 약정액(commitment)의 50%) > 50%
 - 핵심조달비율(12개월)=(잔여만기 12개월이상 도매자금조달 + 소매예금)/(총수신 + 약정액(commitment)의 50%) > 45%
- 핵심조달비율은 자금의 조달 측면만을 감안하는 지표인 반면, 순안정조달비율은 자금의 조달(부채, 자본)측면 뿐만 아니라 자금의 운용측면(자산)도 고려한 유동성 리스크 지표임.
- 장기적, 고정적 투자활동은 안정적 자금조달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규제를 강화함
 - 순안정조달비율 = 요구되는 안정적 자금조달액/사용가능 안정적 자금조달액 > 100%
- 장기 유동성 비율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결국 소매예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건으로 부상할 것임.
- 소매예금도 종류별로 차별적인 안정성을 보일수 있으므로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임.
-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위기 이전부터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BCBS에서 구체적인 레버리지 비율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의를 진행중임.
-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자산의 인정범위를 결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레버리지 비율을 정의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자본은 가급적 고급 자본 위주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자산은 포괄적으로 설정할수록 레버리지 비율이 높게 나오면서 규제의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향후 Pillar 1 으로 편입하여 의무적 규제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최저 자본금 규제 등을 연계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 규제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볼수 있을 것임.

4.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관련 규제 강화

- 금번 글로벌위기의 교훈 중의 하나는 금융의 시스템적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전적으로 시스템적 위험을 국가 전체적 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임.
 - 위기의 전이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었지만 이를 적시에 파산 시키지 못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연쇄적인 연결고리로 인해 시스템위험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경험을 하였음.

-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B; Systemically Important Bank)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판별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국제적인(cross-border) 금융회사에 한정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과 각 국가별로 국내적(domestic)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IMF-BIS-FSB 공동으로 각국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 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자본(capital surcharge)을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타 다양한 추가적인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추가자본의 수준, 부과방법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며 추가자본이외의 감독조치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을 감독당국이 선정하여 추가적인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으로 판정된 금융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시장 왜곡 현상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이미 FSF는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이 필요한 30여개 이상의 거대 복합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설립하였고 우리나라의 감독당국도 일부 금융그룹에 공동감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감원이 SCB(Standard Chartered Bank), 도이치 뱅크의 공동감시단에 수차례에 참석한 경험이 있음.

- 공동감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시단내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이상으로 공동감시단이 방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공동감시단과 진출국 감독당국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 정상적인 영업기간에도 주기적으로 자체적인 도산계획(living will)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음.
 - 이러한 자체적 도산계획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영업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국경간 은행이 부실해졌을 경우 효율적인 은행 정리를 위해서 BSBS의 Cross-Border Resolution Group이 정리절차의 권고사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각국은 금융회사 업종별로 가교 금융회사 설립, 자산이전 등 다양한 종류의 정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은 금융그룹내에 속해 있는 모든 일반 기업(commercial enterprise)의 정리와 관련된 국가간 또는 국가내 정부부처간 조정이 가능토록 함.
 -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서 이상에서 설명된 국가별/금융회사별 상이한 정리수단 및 조치를 합일화(converge)할 필요
 - 각국은 위기관리 및 정리절차/수단에 대한 상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
 - 감독당국은 본국 및 금융회사 진출 현지국가의 정리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
 - 글로벌 금융그룹은 위기시에도 주요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과 컨틴전시프랜(contingency plan)을 보유하여야 하며 감독당국도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 각국은 규제, 감독, 유동성 공급, 위기관리, 정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

명히 이해할 필요

- 글로벌 금융그룹의 복잡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계(netting), 담보제공(collateralization), 파생상품 표준화(standardization of derivatives contract) 등 리스크 감소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정리당국은 특정 금융거래를 정상 금융회사 또는 가교 금융회사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의 계약종료조항(contractual termination clauses)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
 -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 등 정부개입을 종료할 수 있는 원칙 또는 권한을 정부 개입계획을 마련할 때 명시할 필요
- 영국의 Turner는 거대 다국적은행에 대해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강화를 위해서 지점(branch)이 아닌 자회사(local subsidiary)로 조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함.
- 이는 거대 다국적은행이 지역적인 자회사를 보유하는 지주회사 형태로 조직화되는 것으로서 각 지역의 자회사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자본과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국의 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임.
- 이러한 거대다국적은행의 국가적 자회사화(national subsidiarisation)는 해당 금융그룹이 부실화되었을 때 본국의 재정당국이 거대다국적은행 전부의 부실에 대한 지원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잠재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
- 국가적 자회사화가 이루어지면 거대금융그룹이 부실화되었을 때 자회사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 등을 해당 진출국 감독당국 및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따라서 거대다국적 은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거대 다국적은행의 진출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host-country)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외에도 국가적 자회사화로 인해 지역적 유동성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분리(fragmentation)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등 국가적 자회사가 거대다국적은행의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지점형태의 외국은행을 모두 현지법인인 자회사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을 해당국가의 금융감독 당국이 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측면

도 있을 수 있음.

III. 향후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1. 국제적 감독규제의 강화방안의 이행 계획

- 세계 경제가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차별화되면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열의가 식어지는 것에 대해 G20회의에서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규제개혁을 시행할 것을 주문

- 따라서 II장에서 논의된 은행과 관련된 건전성 규제 및 감독강화 제도 도입은 국제적 논의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일정을 걸쳐서 수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초반까지 BCBS는 도입 주제별로 영향평가(QIS: Quantitative Impact Study)를 실시함.
 -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중반까지 BCBS는 주제별로 도입 최종방안(Proposal)을 확정함
 - 2010년말까지 BCBS의 주제별 규제수준의 파라메타를 구체적으로 설정(Calibration)하는 작업을 완료함.
 - 현재 BCBS는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확정된 규제 강화 조치를 각국이 2012년 말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목표(with the aim of implementation)로 추진키로 함.

-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당국도 BCBS의 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국내 영향평가를 사전적으로 실시할것으로 예상됨.
 - 각국별 영향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BCBS는 최종 규제수준을 국제적으로 조절하는데, 각국별로 자국의 금융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치열한 로비 및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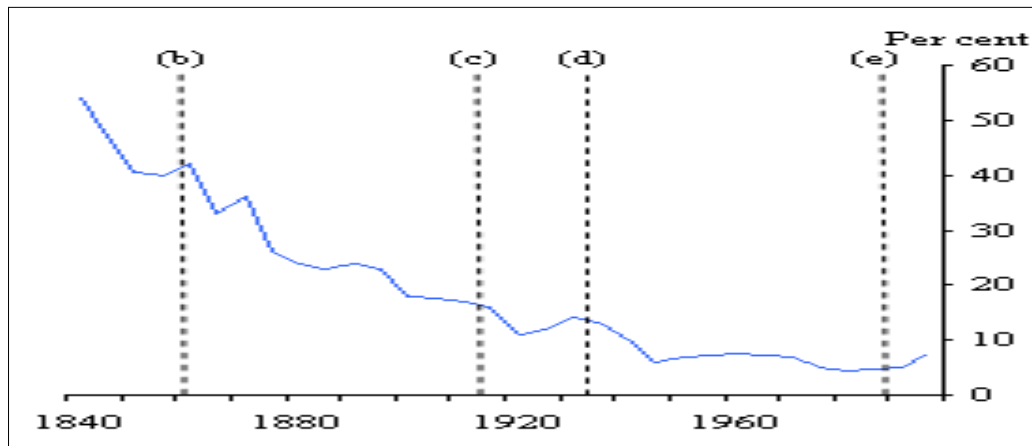
- 한편 계량적 영향평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개별 은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사안별 개별은행의 데이터의 구득이 불가능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계량적 영향평가 분석을 포함치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감독 규제 강화에 따른 향후 은행산업의 발전 전망

가.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안정적 성장모델로의 회귀

- 이상에서 논의된 은행과 관련된 건전성 규제 및 감독강화 방안이 실현되면 은행업은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모델로 회귀하는 것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강화된 자본금 규제에 의해서 최소 자본금 수준의 비율이 현재보다 상당수준 강화된다고 가정하면 은행업의 전반적인 자본대비수익률(ROE)이 하락하는 현상이 불가피
 - 미국 은행의 역사적 자본금 추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자본금 규제가 1.5배 정도 강화된다면 다시 1920년대의 은행 자본금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함.
 - 만약 자본의 증가없이 자본금 규제가 1.5배 정도 강화된다고 가정하면 위험가중자산이 1.5배 감소해야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따라서 자본금 규제의 급격한 강화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결국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은행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그림 4> 미국 상업은행의 총자산대비 자본금 비율 (1840~1993)



자료: Statistical Abstracts through 1970, Report of Condition and Income thereafter

주: b) National Banking Act 1914

c) Creation of Federal Reserve 1914

d) Creation of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33

e) Implementation of Basel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 1990

- 자본금 규제의 절대적인 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것에 추가하여 Tier I 자본을 고질의 보통주 위주로 적립토록 하는 규제, 경기대응적 자본금버퍼의 적립,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규제(capital surcharge) 등이 적용될 경우, 해당은행의 자본금 규제는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추정됨.
 - 이중에서 자본의 절대적 규제수준 상향조정, 조정항목 제외 등을 통한 자본의 질 제고 및 보통주 중심의 Tier 1 비율 규제,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 적립은 모든 은행에게 적용되므로 모든 은행이 3중의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권 안에 있음
 - 만약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규제를 다국적 cross-border 은행 뿐만 아니라 국내적 은행에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대형은행들은 4중의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 은행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중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면서 금리 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서 동시에 출구전략의 시행이 시행될 경우 금리 상승 효과가 배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만약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규제 강화의 시기는 경제회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후로 상당히 뒤로 미루어지면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실행계획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자본금 규제 강화 이외에도 거래계정(trading book), 재증권화, ABCP conduit에 대한 유동성공급(liquidity line) 처리 등에 적용되는 자본요건의 강화로 인해 은행의 해당업무의 축소 영향이 예상됨.
 - 우리나라의 은행의 경우 거래계정이 은행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거래계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외국의 은행들의 경우에는 동 자본규제의 강화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 이외에도 유동성규제, 레버리지 규제 등의 보조적인 규제 강화의 영향이 은행의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은행의 영업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 있음.

- 유동성 규제의 스트레스 상황의 정의에 따른 가변성, 레버리지 규제의 자본 및 자산의 포함 범위에 따라서 동 규제의 영향력은 가변적임.
- 그러나 특히 유동성 규제의 강화는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행태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은행의 외환자금조달/대출의 영업행태를 분석하면 해외에서 단기 채권 등으로 조달하여 국내에서 장기 외화대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음.
 - 이는 해외에서 장기로 외환을 조달할 경우 높은 금리 때문에 국내 외환대출을 해서는 금리 마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단기 해외조달을 하는 것임.
 - 결국 현재의 외환 자금조달/대출의 영업행태는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내재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일정부분 감수하면서 하는 영업행태라고 판단이 됨.
 - 만약 향후 외환 관련 유동성 규제가 강화된다면 현재와 같은 외환자금조달/대출의 영업은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음.
- 이상을 요약컨대 은행의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인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B/S 축소효과가 나타나며 과거의 자산 증가율 경쟁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효성이 약화될 전망이다.

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역적 다각화와 업무 겸업화

-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업무가 위축되면서 은행들이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은행의 업무 지역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특히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IT 및 인터넷 banking 등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진출국의 상황에 따라서는 소매금융상품, 프라이빗 banking 등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지역적으로도 현재의 해외진출국은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다변화가 예상된다.

- 물론 해외진출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부작용 및 실패사례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국내사업을 기반으로 한다면 국내시장 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및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을 발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국제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은행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외환자금 조달의 안정성 제고를 통한 은행의 외환 유동성 리스크 감소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상업은행 업무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은행이 수익성 보충을 위해 업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은행의 겸업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은행의 겸업화의 방식에는 지주회사 방식과 내부겸영(유니버설 बैं킹)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지주회사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비은행 자회사 확보가 가속화되고 지주회사내에서의 업무 다각화 및 업무 재분배 문제와 지주회사내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제고가 큰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은행이 상당부분 유니버설 बैं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예를 들어 은행을 통한 계열 비은행 자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상충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외에도 업무 다각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면서 연금사업, 장기자산운용 업무 등 고령화와 관련된 업무의 다각화가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전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탄생한 베이비 붐 세대가 가장 과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세대의 은퇴시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다. 대형화 및 M&A를 통한 시장 재편의 가속화

- 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이 과 포화상태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음.
 - 과 포화 상태의 금융시장에서 조그만 틈새를 발견하여 이익 창출의 모습을 보이면 모든 금융회사들이 그 부문으로 쏠림현상을 보이는 행태임.

- 향후 은행산업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생적 성장(organic growth)은 더 어려워지고 M&A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 우리나라에 은행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은행 산업의 경쟁구도가 과 포화상태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입장과 금융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은행들 중에서 대형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장환경적으로도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 일부 외국자본 소유 은행의 매각 등이 가시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및 민영화 사안이 끝날 때까지는 은행의 대형화 및 M&A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리금융지주산하의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매각, 산업은행으로부터 분리된 산은지주의 민영화, 외국계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매각 등이 예정되어 있음.
 - 또한 기업은행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영화의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음.

- 결국 국내 은행시장의 경쟁구도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귀결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현재보다는 은행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된 은행의 출현이 예상됨.
 -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형화된 국내의 리딩뱅크의 출현이 국제적인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형은행의 국제화가 필요함.
 - 한편 지방은행들도 지역에 기반한 안정적 수신을 기반으로 영업력을 확대하

는 과정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은행간의 합병의 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IV. 맺음말

- 지나친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적 환경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작용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은 금융산업 역사상 가장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은행은 금융산업의 척추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규제 강화 대상의 초점으로 맞추어져 있음.
 - 은행의 자본 건정성 제고 측면에서 3중, 4중의 규제강화가 예상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유동성, 레버리지 등의 규제 강화가 예상됨.
-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면 은행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은행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위해 지역적 다변화, 업무 겸업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시장내에서의 M&A 등을 통해 대형화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영속적으로 진행되는 차별화(differentiation)-선택(selection)-확장(amplification)의 금융시스템 진화과정에서 성공적인 생존전략을 통해 효율적 진화개체(efficient evolv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김병덕 (2009), “은행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 mimeo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July 2009), “Enhancements to the Basel II Framework”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July 2009), “Guidelines for computing capital for incremental risk in the trading book”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July 2009), “Revisions to the Basel II Market Risk Framework”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Sep. 2009),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 "Principles for Sound Liquidity Risk Management and Supervision”

Financial Stability Board (Sep. 2009) "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 Repo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to G20 Leaders"

G20 (March 2009), "G20 Working Group on Reinfor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moting Integrity in Financial Markets (WG2)"

G20 (March 2009), "G20 Working Group 1 Enhancing Sound Regulation and Strengthening Transparency"